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1월 11일, 이창열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8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창열 의원)

가. 제안이유

-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하고
우대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우대사항 및 감면범위 구체화(안 제7조)
- 우대항목 추가신설(안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5. 11. 11.
- 회부일자 : 2025. 11. 18.
- 상정일자 : 2025. 11. 25.

2. 제안이유

-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하고 우대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우대사항 및 감면범위 구체화(안 제7조)
- 우대항목 추가신설(안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우대사항과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7조(우대)에서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경비 감면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대항목을 추가 신설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부칙에 있던 감면 규정을 본칙에 통합하여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대항목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 차. (생략)
3.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503
----------	-----

발의연월일: 2025년 11월 6일

발 의 자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의원

1. 제안이유

제7조(우대)와 관련하여, 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하며, 우대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대대상 및 감면범위 구체화(안 제7조)

나. 우대항목 추가신설(안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10. 16. ~ 10. 24.(의회사무과-4447), 의견없음.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보건의료원**”을 “「**평창군 의료원 수가 조례**」 제1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이용료
3.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람료
4.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관람료
5.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료
6.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7.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료
8.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제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②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II(100분의 50감면)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1. <u>보건의료원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는 제외)</u></p> <p>2. <u>군이 운영하는 관광지 입장료</u></p> <p>3. <u>군이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료</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7조(우대) ① ----- ----- ----- ----- -----.</p> <p>1. 「<u>평창군 의료원 수가 조례</u>」 제11조에 따른 ----- -----</p> <p>2. 「<u>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u>」 제14조에 따른 <u>이용료</u></p> <p>3. 「<u>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4조에 따른 <u>관람료</u></p> <p>4. 「<u>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u>」 제4조에 따른 <u>관람료</u></p> <p>5. 「<u>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u>」 제4조에 따른 <u>이용료</u></p> <p>6. 「<u>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u>」 제6조에 따른 <u>관람료</u></p> <p>7. 「<u>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u></p>

<신 설>

② (생 략)

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
료

8.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
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
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이창열의원
연락처	(033) 330 -2504